

- 부평구 산곡동 369-480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
공유재산 (토지) 사용 동의안

인 천 광 역 시

- 부평구 산곡동 369-480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

공유재산 (토지) 사용 동의안

의안 번호	978
----------	-----

제출연월일 : 2013. 9.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1. 제안이유

- 가. 무상보육실시에 따라 공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행복백만 프로젝트」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음.
- 나. 「행복백만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산곡동 369-480 시유 부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을 위하여
- 다. 부평구로부터 사용허가 신청이 있어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할 수 있도록 부지 사용을 허가 하고자 함.

2. 시유재산 현황

- 위 치 : 인천 부평구 산곡3동 369-480
- 재산현황 : 토 지 - 876㎡, 건 물 - 지상1층 144㎡
- 재산실태
 - 2013. 8. 8. 경찰청 소유였던 해당 건물과 토지를 교환을 통하여 인천광역시로 소유권 이전 (회계과)
 - 국공립어린이집 활용을 위하여 보육정책과로 재산 이관
 - 건물은 신축년도가 89년도로 노후 되었고 공실상태임.
- 재산관리관 : 보육정책과장

3.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계획

- 사업명 : 국공립 산곡3동 어린이집 신축
- 위치 : 인천 부평구 산곡3동 369-480
- 사업기간 : 2013. 9월 ~ 2014. 11월
- 규모 : 지상2층, 연면적 **414.54m²**, 정원 **57명**
- 신축방법 : 기존 건물 철거('89년 신축) 후 신축
- 사업주체 : 부평구청장
- 소요예산 : 958,000천원 (국237,857, 시비284,213, 구비435,930)

4. 공유재산 사용허가 내용

- 사용목적 :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및 운영
- 허가기간 : **3년**이내 (연장가능)
- 허가면적 : 토지 **876m²**
- 사용료 : 무 상

5. 그 동안 추진 사항

- '12. 9. 12 시유재산과 경찰청 부지 교환에 따른 활용방안 제출
(보육정책과 → 재산관리과)
※ 산곡3동 369-480 국공립어린이집 활용
- '12. 9월 ~ 경찰청과의 시유지 교환추진 (회계과)
- '13. 1. 30 2013년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 수립
※ 산곡3동 어린이집 신축
(총 958백만원 국237,857, 시284,213, 구435,930)
- '13. 7월 ~ 건축심의 및 실시 설계 (부평구청)
- '13. 8. 8 (경찰청↔시) 교환 계약 체결 완료
- '13. 8. 29 재산관리관 지정 통보 (회계과 → 보육정책과)

○ '13. 9. 4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 (부평구 → 시)

※ 신청내용 : 시유부지 876㎡내에 지상2층 규모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허가기간 : 영구, 사용료 : 무상

6. 주변여건 및 필요성

- 인천시 전체 어린이집 중 국공립은 5.3% 차지, 부평구는 12개소로 2.9%수준으로 타군구에 비해 설치수가 저조함.

특히 산곡3동은 국공립어린이집이 전무한 지역으로 국공립 입소를 희망하여도 공급 부족으로 부모의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어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은 필요한 실정임.

〈인천시 국공립어린이집 현황〉

(2013. 9. 5일 기준/개소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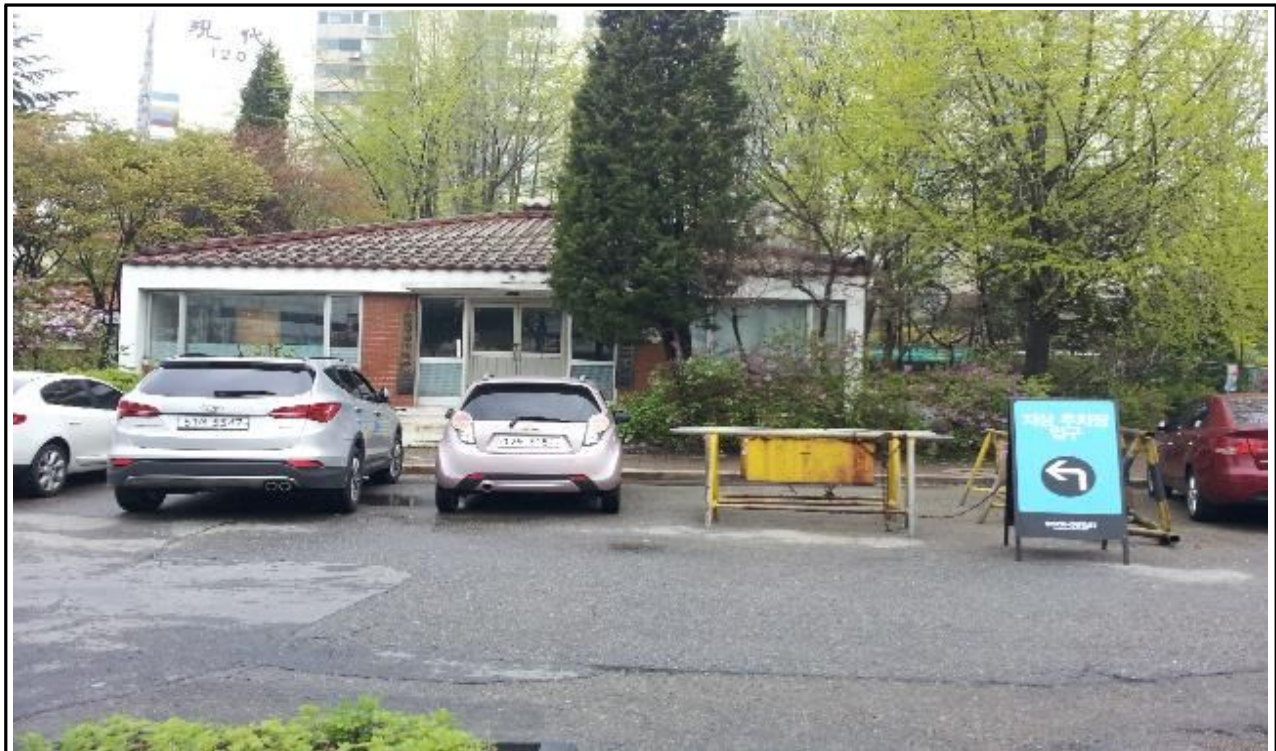
구명 구분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	옹진	비고 (인천시)
어린이집	111	75	254	233	381	420	297	449	20	8	2,248
국공립 어린이집	14 (12.6%)	9 (12%)	17 (6.7%)	10 (4.3%)	23 (6%)	12 (2.9%)	13 (4.4%)	12 (2.6%)	6 (30%)	4 (50%)	120 (5.3%)
전체아동수	6,323	4,233	21,131	16,223	31,261	29,695	19,171	33,583	2,093	855	164,588
국공립 아동정원	774	618	1,303	962	1,264	845	721	787	455	207	7,936

- 지역특성상 부평구는 구도심지역으로 부지 확보 및 구 재정 여건으로 부지매입이 어려워 인천 시 민선5기 핵심사업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행복백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부평구 관내 시유지를 활용하여 설치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지역의 보육수요 충족에 기여

7. 참고자료

- 위치도 및 현장사진
- 관련법령 발취

위치도 및 현장 사진



관련법령 발췌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계약(隨意契約)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2.4>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

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수익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공유재산으로 받아들인 후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價額)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기간 이내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 사용·수익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2.4>

③ 생략

④ 생략

⑤ 생략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생략

③ 생략

④ 삭제 <2010.2.4>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 4.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 10. 생략

1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용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 회가 동의한 경우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 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0.8.4, 2013.3.23>

② 생략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8.4, 2013.6.21>

1.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2. ~ 18. 생략